어린이 운송용승합차량 점검방법 매뉴얼(공단)

점검항목	점 김 방 법
1.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함○ 신고증명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전면 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
2. 어린이통학버스의 교육필증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시설 내 잘 보이는 곳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보관하여야 함
3. 어린이통학차량 차체 색상 (황색)여부	○ 창유리를 제외한 모두 황색 (스포일러포함, 천정에어컨 제외, 투톤색상 불가)
4. 어린이보호표지 앞면 및 뒷면 규격 및 상태	 ○ 자동차의 앞면 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유지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 보호표지판을 갖출 것 ○ 앞면규격(가로*세료):150* 400mm 이상 ○ 뒷면규격(가로*세료):200* 500mm 이상 ○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 고딕체(썬팅에 의한 시인도저하 확인)
5. 어린이보호표시등 설치 상태 및 작동 여부	 ○ 적색표시등은 바깥쪽(2개)에, 황색표시등은 안쪽(2개)에 설치 ○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 하단부는 뒷면 옆 창문 개구부의 상단선 높게 설치 ○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 문을 열면 발판이 나오며 적색등이 점멸하고 문을 닫으면 발판이들어가고 황색등이 점멸해야함 (동시에 점멸 불가)
6. 승차좌석 인원 중감 및 설치 상태	○ 등록증 승차정원 확인 ○ 통로 접이식좌석 중 외부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좌석은 설치불가
7. 간접 시계장치 설치 및 상태	○ 차체 바로 앞에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 설치 (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 ○ 좌우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 전부가 확인 될 것
8 좌석안전띠 설치 및 작동 여부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것(높이 조절기능이 없는 3점식 좌석안전띠는 설치 불가)
9.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상태 및 작동 여부 (' 19. 4. 17. 시행) (이전 차량 소급적용 안내)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에서 제거한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 표시등 또는 표시등이 작동하는 구조 확인
10. 숭강구 발판높이 규격준수 여부	 ○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cm 이하 (보조발판 설치시 규격: 윗면의 유효너비의 80%이상 세로 20cm이상, 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 ○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cm 이하(15인승이하 25cm 이하)
11. 정지표시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 15. 1. 1. 시행)	 ○ 좌측 옆면 앞부분에 설치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 가능) ○ 바탕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 ○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질 것 ○ 승강구가 닫힐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힐 것
12. 후방확인 영상장치 및 후 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상 태 및 작동 여부 ('19.7.1.시행)	○ 자동차가 후진시 후방확인 영상장치(필수) ○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필수) ○ 운전자에게 자동차후방 보행자 근접여부를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선택)
13. 차량 내 유아용 보호 장구 (카시트, 부스터, 휴대용 카시트) 비치여부 14. 소화기 및 비상 탈출용	○ 6세 이하 어린이 탑승차량(어린이집, 유치원 등)
14. 소와기 및 미상 달글용 망치 비치여부	○ 소화기 비치여부 및 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여부(15인 이상 4개)

붙임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요약

□ 도로교통법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 동승보호자 동승(법 제53조제3항)	범칙금 13만원 (승합차 기준)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 장이 부과)

□ 자동차부품규칙

시행일	주요내용	조문	세부내용
'99.1.1.	황색 도색	제19조제8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색상은 황색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제19조제9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앞뒤에 보호표지 부착
	좌석안전띠	제27조제6항	-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승강구(보조발판) 규정	제29조제4항	-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 2단 발판 높이 20센티 이하
	앞뒤 상단 표시등 설치	제48조제4항	-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11.12.1.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제50조 제3~4항	-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14.2.21.	후방카메라·후방경고음 설치	제53조의2	-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좌측 옆면에 정지표시장치 부착	제19조 제10항	-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설치
′19.4.17.	하차확인장치 설치	제53조의4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차실 가장 뒷열 에 있는 좌석 부근에 하차확인장치 설치